

이 資料는 2005.8.26(금) 09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報 道 資 料	생 산 일	2005. 8. 24
		생산부서	조세정책과
		담당과장	변상구(2110-2139)
		담 당 자	김종옥(2110-2140)

題 目 : 2005년 세제개편(안)

1. 개 요

□ 재정경제부는 '05.8.26(금) 10:00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(위원장 :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)를 개최하여 “2005년 세제개편(안)”을 심의하였음. 이 날 토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2. 2005년 세제개편(안) 주요내용

(1)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

- 기업구조조정(예: 업종전환)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
-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,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등 규제적 성격이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정비
- 국제조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적용을 명문화하고,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편드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(Global standard)에 맞게 개선
- 기부금제도,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·합리화

- **경제활력의 조기회복**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,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, 사립대학교 민자 학교시설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

(2) 비과세 ·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

-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,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, 세금 우대 종합저축, 장기주택마련저축,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**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· 감면제도 폐지**

*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·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

- **과세기반 확충**을 위해 국가 ·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주 ·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과 LNG 세율 조정

(3)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한 세제보완

-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,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
- 중소기업 ·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,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완화
- 농 · 축산 · 임 ·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농 · 어민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

- **일용근로자 및 비과세·분리 과세되는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, 지방자치단체·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**

(4) **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제도 신설, 지방이전 지원세제 확대, 지방이전 종업원에 대한 지원 확대**

(5) **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**

- **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 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**
- **연말정산 서류 생산기관이 관련 증빙을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여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 체제 구축**
- **수출입신고서 검역신청 등 관련신고를 세관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마련**

3. 향후 추진일정

- **법인세법·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주세법·특별소비세법·인지세법·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·관세법·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 등 10개 세법 개정안을**
- **부처협의·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.2일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**

별첨1. 2005년 세제개편(안)

별첨2. 2005년 세제개편(안)에 대한 문답자료

財 政 經 濟 部 政 策 弘 報 管 理 室 長